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32

발의연월일: 2022. 11. 14.

발 의 자:신현영·강은미·김윤덕

문진석 • 민형배 • 서삼석

윤후덕 • 이동주 • 장혜영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 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 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고 지원금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8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했 혅 개 정 아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 원) ① -----전전년도 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 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 17 이상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 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22 <삭 제>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